

여름철 풍수재 보험 대책

윤 동 혁
(대구지부장)

1. 머리말

흔히 여름하면 장마를 예상하게 되며 물난리에 의한 수재민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해마다 여름철이 끝날 무렵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다. (87년 태풍 셀마·다이아나 및 호우(경인지방) 등)

가뭄이나 대기 오염 등의 이유로 기상 이변이 극심하여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풍수재 수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꼭 한번쯤은 재산 관리 측면에서 보험과 연관하여 풍수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상적으로 풍수재 사고에 대하여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추가로 풍수재 위험을 담보(특별 약관)하기 위한 특약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법 '법률 제2482호'에 의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인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의 부담없이 자동적으로 풍수재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2. 풍수재 담보 특약의 종류 및 담보 위험

가. 화재보험

구분	특별 약관의 종류	풍수재 관련 담보 위험
국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재 위험 담보 특별 약관 ○ 확장 위험 부담 특별 약관(I).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 홍수, 범람, 폭풍, 우박
영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ended Coverage Endorsment(E.C.E) ○ E.C.E(SR) ○ Flood, Inundation, Rain & Fresh Water Damage Coverage Cla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풍(Windstorm), 우박 ○ 건물이 바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지붕·벽의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에 의하여 입은 손해 ○ 홍수(Flood), 범람(Inundation), 우담수(Rain&Fresh Water Damage)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영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rthquake, Water Damage Storm, Tempest and Flood Extension Endors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랭크 또는 배관의 분주나 범람, 폭풍, 폭풍우(Storm, Tempest), 비(Rain),홍수(Flood)도랑이나 지하 배관에서의 범람

나. 동산 종합 보험

약관의 종류	풍수재 관련 담보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약관 ○ 잡위험 부담(계약자 선택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담수유, 수해(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에 기인하지 않는 것), 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재 위험 부담 특별 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범람

3. 약관 해설

가. 풍수재해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1) 폭풍(Windstorm), 폭풍우

일본 약관 해설서

㉠ 폭풍은 기상학에서 Beaufort Wind Scale인 풍력계수이며, 풍속 25.2m/sec~29.0m/sec인 것을 말한다.

㉡ 폭풍우는 일반적으로 폭풍에 비를 수반한 상태를 말한다.

㉢ 폭풍을 대별하면 태풍(열대 저기압), 선풍(온대 저기압), 기상전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 N. Y. Fidelity Phenix Fire Ins. Co.의 해설

㉣ 초창기 폭풍 특약에서는 바람이 적어도 33.3m/sec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제약 사항이 있었으나.

㉤ 최근에는 바람이 손해를 끼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면 이는 폭풍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한 손실

은 담보된다.

일반 기상학 해설

- ㉠ 폭풍(Storm)은 일반적으로 평균 풍속이 13.9m/sec 이상이 되는 강한 바람을 말하며,
- ㉡ Beaufort 풍력계수에서는 풍력 11, 즉 평균 풍속 28.5m/sec ~32.6m/sec의 바람을 말한다.

(2) 홍수(Flood)

강 파위가 넘쳐서 생기는 홍수 (옥스포드 사전)

(3) 범람(Inundation)

부근 일대를 온통 물로 뒤덮기 (옥스포드 사전)

(4) 폭풍(Storm)

Cyclone, Hurricane, Typhoon(옥스포드 사전)

(5) Waterdamage

물의 누수, 난방 또는 공조설비, 수도관의 누수로 인한 손해(Glossary of Insurance Terms)

나. 풍수재 위험 담보 특별 약관

-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 약관(이하 「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1의 손해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경우에 회사는 방재(防災) 또는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 손해.

②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과열 또는 폭발의 손해.

③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④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⑤ 바람(風),비(雨), 눈(雪),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 오므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추위(寒氣), 서리(霜), 어름(氷), 눈(雪)으로 생긴 손해.

⑦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전식전구(電飾電球)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3) (공제액)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해당 건물의 가액의 2% 해당액 또는 50만원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보통 약관 13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약관을 따릅니다.

- 1) 담보 위험
- ㉠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의 풍재 또는 수재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이 특별 약관의 풍재

또는 수재의 원인이 될 자연의 현상은 상기 위험외에 Typhoon·Tornado·Hurricane 등의 풍재, 해일에 의한 수재도 포함되나 그 명칭에 대해서는 학술상 일정치 않으므로 이 특별 약관에서는 일반적 명칭을 예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자연적 현상에 의한 재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추위, 서리, 얼음, 우박, 눈사태 등은 풍재, 수재의 자연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약의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방재 또는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풍수재에 있어서는 기상 관측이 순간 현저하게 발달하고, 풍재 예보도 비교적 조기 속도 체제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적중률도 향상되고 있으므로 재해 방지책이나 피난도 재빨리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풍수재 위험 자체가 일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손해에 대한 공제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손해액에서 보험가액의 2% 해당액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2) 면책 위험

㉠ 풍재 또는 수재시에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수재로 인한 유실 손해는 보상된다.

㉡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과열 또는 폭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풍수재에 기인하여 발생한 폭발 또는 폭발로 유발된 화재 손해는 보상된다.

㉔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풍수재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 종류의 수재(대표적인 것은 지진, 해일)는 부담보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손해의 범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진 위험과 별도로 생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보험 인수 기술적인 관점에서 부담보로 한 것이다.

㉕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것은 댐 또는 제방 구조상의 결함, 하자 또는 자연열화(自然劣化)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뜻한다. 따라서 이 특약에서 담보하는 풍수재 위험으로 인하여 댐 또는 제방이 무너져 수재를 일으킨 것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 된다.

㉖ 바람, 비, 눈(강설), 모래, 먼지가 들어 오으로써 생긴 손해, 동결 또는 적설에 의한 파괴손, 염분에 의한 손해 등은 부담보로 되어 있다.

㉗ 기타 간판, 광고탑, 네온사인 장치 기타 이와 비슷한 옥외 부속 설비에 풍재와 관계없이 전기 사고로 생긴 손해와 전기 전구의 필라멘트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4. 풍수재 위험 담보 특약요율(화재보험 요율서 참조)

(1) 기본 요율표

등지별	급별	
	1급	2급
1등지	0.0412%	0.0495%
2등지	0.0487%	0.0585%

(註) ① 등지

● 1등지: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 대

(별표) 단기요율 적용표

보험기간	15일 까지	1개월 까지	2"	3"	4"	5"	6"	7"	8"	9"	10"	11"
단기요율	년요율의15%	년요율의20%	30%	40%	50%	60%	70%	75%	80%	85%	90%	95%

전직할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 2등지: 부산직할시,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② 급별

● 1급: 화재 보험 요율서 건물 규정에
서 정한 구조 급수 1급 및 2급
인 보험의 목적

● 2급: 화재 보험 요율서 건물 규정에
서 정한 구조 급수 3급 및 4급
인 보험의 목적 및 기타 구조 급
수

(적용상의 유의 사항)

① 수재 위험만을 담보할 경우... 위
요율의 80% 적용

② 풍재 위험만을 담보할 경우... 위
요율의 20% 적용

(2) 단기 요율

* (별표) 참조

(적용상의 유의 사항)

보험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기간에 7월, 8월, 9월이 포함될 때에는 단기 요율에 각 월마다 10%씩 가산한다. 그러나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5. 보험료 산출 요령

예) 보험가입금액: 1억원
건물구조급수: 2급
등지: 2등지(부산직할시)

(계산방식)

수재 위험만을 담보할 경우

1억원 × 0.0585% × 80%
= 46,800원(년간 보험료)

○ 풍재 위험만을 담보할 경우
1억원 × 0.0585% × 20%
= 11,700원

○ 풍수재 위험 전체를 담보할 경우
1억원 × 0.0585%
= 58,500원(년간 보험료)

6. 맺는 말

끝으로 계약자(피보험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름이나 가을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 피해, 지역적 집중 호우로 인한 수재 피해, 비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돌풍에 의한 풍재 등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서 재산 관리를 하여야 함은 당연 사항이라 생각되며, 이 문제를 간과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풍수재 담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원의 연간 보험료는 최저 41,200원, 최고 58,500원으로 그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화재 보험 가입과 아울러 풍수재 재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으면 한다.

특히 바람으로 인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도괴나 추락은 인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 보험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